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651

제출연월일: 2020. 7. 8.

제 출 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개정이유

공영주차장 수탁자 선정방법을 개선하고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조정하며 상위 법령의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영주차장 수탁자 수의계약에 의한 선정방법 삭제(안 제5조제2항)

- 나. 주차요금 감면사항 변경 및 신설
 - 1) 다자녀 가정에 대하여 관련 조례의 통일된 정의를 사용하고 감면 비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변경(안 제6조제4항제8호)
 - 2)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 100분의 50의 감면규정 신설(안 제6조제4항제12호)
 - 3)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100분의 50의 감면규정 신설(안 제6조제4항제13호)
- 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이용자 편의 시설 명시(안 제10조의2)
-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3. 근거법규: 따로 붙임

-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
- 나.「모자보건법」제3조
- 다. 「울산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제3조, 제4조
- 라.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해당사항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해당사항 없음

다. 성 별 영 향 평 가: 개선사항 없음(여성가족과-20905호, 2020. 5. 25.)

라. 입법예고: 2020. 5. 11. ~ 6. 1. / 제출의견 2건

· 제출의견 및 검토결과

연번	계츠기	계초이건	검토의견			
- 건민 -	제출자	제출의견	내용	결과		
1	권태호	○ 병역명문가				
	복지건설	예우대상 차량	│ │○「울산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		
	위원장	의 주차요금	예우 및 지원 조례 및 제3조(구청	"반영"		
	(5.11.접수 - 7	감면 혜택기준	장의 책무) 및 제4조(예우 및			
)	마련		개정조례안 제6조		
2	안전총괄 과 (5.12.접수)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 차량	지원)에 의거하여	(주차요금)제4항		
				제13호에 병역명문가		
		의 주차요금	○ 병역명문가가 구민으로부터	예우대상자에 대하		
		• • • • •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여 주차요금의		
		감면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	100분의 50 감		
		(50퍼센트) 규	하여 감면이 필요함	면조항 신설		
		정	이기 교단의 글짜함			
		신설 요청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울산광역시장"을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또는"을 "시장 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한다)영 제10조제1항"을 "한다)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주차장 관리를 위탁 받은 자는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를 나누어 납부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4 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사·공단이 주차장 관리를 위탁 받은 경우에는 주차장 사용료의 납부방법을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의2제1항 중 "「주차장법 시행 규칙」(이하"규칙""을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6조제4항제2호 중 "같은법시행규칙"을 "같은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가 2명 이상이 되는 가정"을 "「울산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으로,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100분의 60을 경감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울산광역시 중구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12조"를 "「울산광역시 중구 헌혈 및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12조"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울산광역시장"을 "시장"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2.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경우로서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임산부 증명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 13. 「울산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제2장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주차장 이라함은 「주차장	1
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u>울산광역시장</u> 또는 울산광역시	-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	<u>한다)</u>
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노	
외주차장을 말한다.	<u>.</u>
2. 민영주차장 이라함은 <u>울산광역</u>	2 <u>시장 또는</u>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또는	
구청장 이외의 자가 설치하는 노	
외주차장을 말한다.	
3. • 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5. 무상사용 노외주차장 이라 함은	5
「주차장법 시행령」(이하"영"	
이라 <u>한다)영 제10조제1항</u> 의 본	<u>한다) 제10조제1항</u>
문 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	
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	
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구에 납부 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선정방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부방법
제1항 제1호의 <u>경우</u>	<u>구청장이</u> 정하는 <u>방법</u>	<u>구청장이</u> <u>정하는</u> <u>금액</u>	구청장이 <u>정하는 방법</u>
제1항 제1호 이외의 비영리 공익법 인 및 단체	수의계약	주차장면적에 대한 도로 점용료 또는 공유재산 대부료 상당액 및 평가액	<u>3</u> 월단위로 선납
<u>그 밖의</u> 경우	<u>경쟁계약</u>	<u>입찰가격</u>	<u>3</u> 월단위로 <u>선납</u>

③ • ④ (생 략)

제5조의2(거주자우선주차 구획 설치 제5조의2(거주자우선주차 구획 설치 · 운영) ① 법 제10조 및 「주차장 법 시행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6조의2에 따라 구청장은 당해 지역내 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의 원활한 통 행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 을 위하여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 ② 주차장 관리를 위탁 받은 자는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를 나누어 납부하는 경우에 는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제34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사 · 공 단이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경 우에는 주차장 사용료의 납부방법 을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 운영) ① ----- 「주차 장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6조 (주차요금 등) ① ~ ③ (생 제6조 (주차요금 등) ① ~ ③ (현행 략) 과 같음)

④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경감대상자동차 및 그 비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아래 각호의 사 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 장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 1. (생략)
- 2.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u>같은</u> 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 별표 1에 따른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주 차요금의 100분의 60을 경감한다.
- 3. ~ 7. (생략)
- 8.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가 2 명 이상이 되는 가정의 가족 구 성원 자동차 중 다자녀 사랑카드 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 운전하 는 비사업용 자동차(승용자동차 와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승합자 동차만을 말한다)에 대하여 주 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다.
- 9. 「울산광역시 중구 헌혈 및 장기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 12조에 따라 장기기증사업의 장

세0소 (구사요금 등) ① ~ ③ (연행
과 같음)
4
<u>.</u>
1. (현행과 같음)
2 같은
법 시행규칙
3. ~ 7. (현행과 같음)
8. 「울산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
본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
자녀가정
<u> </u>
<u>100분의 60을 경감한</u>
<u>다.</u>
9. 「울산광역시 중구 헌혈 및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2조

려 및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기증 자 및 장기기증 등록자로서 증을 소유한 사람에게 당일 주차요금 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0. (생략)

11.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 사자증 소지자(본인)에게 주차요 금의 100분의 20을 경감한다.

<신 설>

<신 설>

(5) · (6) (생략) <신 설>

10. (ਰ	현행과	같음)		
11. <u>/</u>	<u> 기장</u>		 	

- 12.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경우로서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 모수첩 등 임산부 증명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 00분의 50을 감면한다.
- 13. 「울산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 제2조제2호 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 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 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5)·(6)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 규정에 서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 편의

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
설, 자동차 관련 시설로 한다.

근거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할 수 있다.

□ 모자보건법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울산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생략)

- ② 구청장은 구가 설치·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시설 등의 **사용료 등** 의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우대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예우대상자 가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 1. ~ 2. (생략)
 - 3. 구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시설 등의 사용료·입장 료·수강료·주차요금 등 감면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④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설치하는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관리사무소, 휴게소 및 공중화장실
 - 2. 간이매점, 자동차 장식품 판매점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 2의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 소(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
 - 3. 노외주차장의 관리 · 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 4.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군 또는 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미첨부 사유

○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 주차장 수탁자 선정방법 개선, 주자요금 감면사항 조정, 상위 법령의 조 례 위임사항 반영 등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재정 수입 감소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3. 작성자

○ 소 속: 교통과

○ 직 급: 지방행정주사보

○ 이 름: 고유림

○ 연락처: (052)290-3963